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계 415	(전화번호) 76-6597	결구 부시장
처리기간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10px; display: inline-block;"> 결재 76. 7. 30 제2부시장 </div>		
시행일자	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2부시장 전결 도시정미과장 도시계획과장	지역계획계장	법무담당관 (2세안심) 종합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
기안책임자	장익호	76. 7. 20 조병현	조
경수환	유신조	발신	시장
제목	서울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결정 및 변경결정 지적고시		
제1안	내부결재		
	1. 건설부 고시 제 368 호 (73. 9. 6) 에 의거 지구지정된 원 장교 재개발 지구와 건설부 고시 제 46 호 (76. 4. 7) 로 지구 지정된 청계천 7가 재개발 지구에 대하여 건고시 제 104 호 (76. 7. 14) 로 변경 결정 (지구세분) 고시 되었기 2. 도시 계획법 제 10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 4. 4) 의 권한 위임에 따라 도시 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 고제		
제2안	고시안		
	서울특별시 고시 제 18 호 (76. 7. 30) 도시 계획 (재개발 구역) 변경 지적 고시		
	1. 건설부 고시 제 104 호 (76. 7. 14) 로 변경 결정된 서울 도시 계획 (재개발 구역, 구주차량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 승인 하였기.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		

2. 또한 양자택일 도시계획사업(도로, 주차장)을 인정하여, 생활하고 생활하는
 한편, 카랑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소관 관할부서에서 12조
 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치한다

전월부 도시 제123호 (7342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
 도시 한다.

공 광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정비규 도시 계획의
 관할구청 시민 봉사설에 비치하고 도시 소유자 및 이해
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

76.8
 서울특별시장

1. 장교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 ^{지적심} ~~결정~~ ^{조사}

당 초			변 경		
지구명	위 치	면적	지구명	위 치	면적
전 체	서울중구장교동일대	43.900 ^{M²}	전 체	서울중구장교동일대	43.900 ^{M²}
장교1지구	중구장교동 62	5.800	장교1지구	중구장교동 62	5.800
" 2지구	" " 63-1	10.800	" 2"	" " 63-1	10.800
" 3지구	" 장교동	10.400	" 3"	" " 51	10.400
" 4"	" 2가88-5	8.600	" 4"	" 을지로2가88-5	1.856
" 5"	" " 22-7	5.000	" 5"	" 장교동 22-7	1.763
" 6"	" " 22-4	2.104	" 6"	" " 22-4	1.572
" 7"	" 수표동 47-6	1.196	" 7"	" 수표동 88-1	1.501
			" 8"	" " 11-3	1.446
			" 9"	" " 85-3	824
			" 10"	" " 67-2	744
			" 11"	" " 69	125
			" 12"	" " 61	816
			" 13"	" " 60	823
			" 14"	" " 47-6	1.196

지정구역
주요구역 도로조사

지구명	번호	구분	등급	유발	특권	연장	시점	종점
장교지구	1	신설	소로	2류	8"	58"	을지로가 88-7	을지로가 88-1
"	2	"	"	2류	8"	30	수도동 66-7	수도동 67-13
"	3	"	"	3류	6"	28	" 85-2	" 59
"	4	"	"	3류	6"	36	장교동 21-1	" 87
"	5	"	"	4류	4"	26	수도동 67-25	" 67-16

주요구역 도로조사

지구명	구분	명칭	위치	면적	비고
장교지구	신설	장교지구 제1주차장	을지로가 88-8 뒤대	270 ^{M2}	
"	"	제2	수도동 86 "	607 "	
"	"	제3	" 67-11 "	546 "	

지정구역
2. 청계천 7가 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도로조사

지구명	위치	면적	지구명	위치	면적
청계천7가지구	종구선당동 27번지앞대	19,444 ^{M2}	전체		19,444 ^{M2}
			청계천7가1지구	종구선당동 220-17번지	3,517
			" 2지구	" " 217-150	810
			" 3 "	" " 217-39	2,135
			" 4 "	" " 217-34	850
			" 5 "	" " 217-73	709
			" 6 "	" " 204-26	1,463
			" 7 "	" " 213-5	1,580
			" 8 "	" " 217-57	1,320
			" 9 "	" " 213-15	590
			" 10 "	" " 217-70	2,470

※ 전체 면적에는 도로 및 주차장 면적 4,000^{M2} 포함 되어 있음.

정리

지구명	번호	구분	등급	유형	층원	연상	시점	종점
청계7가지	1	신설	소로	2류	8M	58M	신안동 217-35	신안동 217-61
	2	"	"	"	8	32	" 217-16	" 217-40
	3	"	"	"	8	43	" 220-11	" 218-70
	4	"	"	3류	6	75	" 217-46	" 220-11
	5	"	"	"	6	92	" 204-10	" 213-20
	6	"	"	"	6-3	140	" 217-99	" 217-43

정리

지구명	구분	명칭	위치	면적	비고
청계천가재	신설	청계천가재 주차장	신안동 217-11 비적 구역	1,270 ^m 2	

* 도면은 당시 도시 정비국 도시계획과와
관할구청 시면 분사실에 보관함

제3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제목: 등 건

1. 건설부 고시 제 104 호 (70.7.14) 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서울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승인 하얏기 보조함이나 첨부: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2부

제4안

수신: ~~건설부장관~~ ~~총무청장~~

발신: 시장 (과장)

제목: 등 건

1. 서울 도시계획 (재개발구역) 결정 및 변경 결정 지적 고시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고시 하얏기 통보 하얏기 (하얏기) 업무에 착수 하얏기 바램 (바램) 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2부 (1부)

수신처: 지구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지도과장

제 6 안

수신: 총무처장관 (시: 문화공보실장) (발신: 과장)

제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 하여
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가 게재구분: 고시

나 " 건명: 서울 도시계획(재개발구역)변경 지적조사

다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3조

첨부: 고시문 사본 그부 (1부) 끝